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 구합 75576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기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정산에 따라 부당집행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 달라는 취지의 정산통보', 그 후속 "납입고지"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 대상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 두 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2. 정산금 납입고지 및 통지의 법적 성격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고지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협약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구 관리규정과 구 처리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협약에 따른 정산절차의 일부일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제재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는 환수처분과 달리, 위와 같은 사업비 반납요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과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협약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이 부당집행된 금액을 한도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사업비정산 행위에 불과하다.

행정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기술료, 대응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